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20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 다. 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8. ~ 11. 28.)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민관협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

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 구성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의 감사부서장

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

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7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관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노용희(2133-3078)